

목 차

의안번호	제 2014-00 호
의 결 연월일	... (제 회)

의 결 사 항

「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」
신설 · 강화규제 심사안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□ 제도(개정안) 개요	1
II. 규제심사안	4
1. 이착륙장 설치 설치 및 관리기준	4

제 출 자	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
제출연월일	2014. 07. 00.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1.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등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착륙장 등급에 따른 활주로 길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등급 이착륙장 : 잔디 340m 이상(포장 288m 이상, 비포장 313m 이상) - 2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(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,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) - 3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(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,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)
2.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설치 기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 1개소 이상 설치 ○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시단·종단에 설치를 권장하고, 보호구역의 길이와 폭은 이착륙장 등급에 따름
3. 운항관련시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착륙장에는 공중과 지상 활주로 및 유도로 지역에서 잘 보이고,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있는 장소에 풍향지시기(Wind sock) 설치 ○ 이착륙장의 활주로 길이·폭, 활주로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길이·폭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 설치
4. 이착륙장 관리기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 여부, 포장면 균열,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 점검 ○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작성·관리 등 월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
5. 이착륙장 관리검사 및 시정조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항공청장은 연1회 정기검사 실시 ○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에게 시정조치 요구

□ 제도(제정안) 개요

- 이착륙장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한 항공법(제12256호, '14.1.14 공포, '14.7.15 시행) 개정에 따라 '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' 제정 추진
- 최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항공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경량 비행장치·경량항공기 증가하고 있으나, 인명 사고가 연속 발생
 - * 사고현황 : 총24건('09년 6, '10년 2, '11년 7, '12년 4, '13년 4, '14년 1)
-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고, 이착륙장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기준 도입 필요
 - *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준 등 안전대책 마련 필요('12.7 국회, '12.11 중앙일보)
- 그동안 경량항공기의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,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권고사항으로 제정·배포하고 준수 요청('12.12)
-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, 항공레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
 - 항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

II. 규제심사안

1.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

㉠ 규제 신설(또는 강화) 내용

- 항공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착륙장 등급별 활주로, 활주로 안전구역·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<이착륙장 등급>

- 활주로 길이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
 - ① 1등급 이착륙장 : 잔디 340m 이상(포장 288m 이상, 비포장 313m 이상)
 - ② 2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(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,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)
 - ③ 3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(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,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)
- 이착륙장 등급 구분 근거
 - ① 1등급 : 이륙활주거리가 가장 긴 CTLS기준 250m에 착륙 시 젖은 잔디상태의 안전계수 1.35(영국 기준)를 곱함
 - ② 2등급 : 이륙 또는 착륙 활주거리 200m에 착륙 시 젖은 잔디상태의 안전계수 1.35(영국 기준)를 곱함
 - ③ 3등급 : 이륙 또는 착륙 활주거리 150m에 착륙 시 젖은 잔디상태의 안전계수 1.35(영국 기준)를 곱함

○ 이착륙장 등급 구분 이유

-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의 활주로 길이는 200m ~ 700m 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,
- 미국 기준*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 중 일부는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 불가피

* 활주로 최소길이는 해면고도에서 275m 또는 이용 항공기의 공시된 최소착륙거리 또는 이착륙 시험 2회를 수행한 것 중 가장 긴 것을 적용

- 따라서,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을 폐쇄하지 않고, 항공레저 동호인들의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

<활주로 안전구역 · 보호구역>

○ 활주로 안전구역

- 기존 운영중인 이착륙장의 사용을 위해 활주로 안전구역*은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

* 미국은 활주로 시단과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,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으로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

- 활주로 안전구역을 활주로 시단과 종단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 할 경우 기존에 운영중인 대다수 이착륙장이 기준 미충족
-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,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으로 설치

○ 활주로 보호구역

-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활주로 시단과 종단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규정, 기존에 사용중인 이착륙장에 미치는 영향 없음

<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(안)>

현 행	제 정 안
(신 설)	<p>제4조(이착륙장 등급) 이착륙장은 활주로 길이,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구분하며, 등급별 이착륙장의 설치도면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다.</p> <p>제5조(운항관련 시설) ① 이착륙장에는 공중과 지상 활주로 및 유도로 지역에서 잘 보이고,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풍향지시기(Wind sock)를 설치하여야 하며, 풍향지시기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풍향지시기는 흰색(White) 바탕에 붉은색(Red) 또는 황적색(Orange)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, 지지대의 높이는 2.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한다.</p> <p>③ 풍향지시기는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지 않고, 나무나 건물 또는 대표 풍향과 풍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에 가까이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계류장,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주 패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.</p> <p>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, 소화장비, 구급장비, 항공일지(Flight log)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, 트레일러하우스 등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</p> <p>⑥ 이착륙장의 활주로 길이 · 폭, 활주로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길이 · 폭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⑦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 비치할 것을 권장한다.</p> <p>제6조(계류장)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, 계류장을 항공기 비행 경로의 아래 또는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, 무단출입 방지와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.</p>

	<p>제7조(CCTV 설치) ①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한다.</p> <p>②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건물) ① 이착륙장에 건물 및 격납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이격(離隔)하여 설치한다.</p> <p>② 이착륙장에서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소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③ 연료저장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활주로 및 유도로 안전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활주로 길이 및 폭) ① 이착륙장 등급에 따른 활주로 길이는 다음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등급 이착륙장 : 잔디 340m 이상(포장 288m 이상, 비포장 313m 이상) 2. 2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(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,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) 3. 3등급 이착륙장 :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(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,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) <p>② 활주로 길이는 활주로 표면 고도에 따라 고도 300m당 25m의 비율로 증가되어야 한다.</p> <p>③ 활주로 폭은 비포장의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,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제12조(활주로 안전구역) ①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,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이어야 한다.</p>
--	--

	<p>③ 활주로 안전구역의 표면은 경량항공기등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, 활주로 안전구역에는 활주로 및 운항목적의 표지를 제외하고 구조물·도로·주기장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13조(활주로 보호구역) ①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시단·종단에 설치를 권장하고, 보호구역의 길이와 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등급 :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,000m까지로 하며,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,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1,000m 되는 지점에서 폭 45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. 2. 2등급 :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700m까지로 하며,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,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700m 되는 지점에서 폭 42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. 3. 3등급 :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300m까지로 하며,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,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되는 지점에서 폭 36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. <p>③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시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(수평) 대 1(수직)로 한다.</p> <p>제16조(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 준수사항) ①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이착륙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</p>
--	--

	<p>야 한다.</p> <p>②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이착륙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항공청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은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이착륙장 관리)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여부, 포장면 균열,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 2. 활주로 점검결과,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할 것 3. 잔디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고 롤러로 다지고, 토끼 및 두더지 등과 같은 짐승이 파놓은 구덩이·굴(窟)을 제거할 것. 4. 잔디 활주로의 표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때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평탄함을 유지할 것. 5.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짐승이 활주로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 6.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할 것 <p>제18조(장애물의 통제)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
--	---

	<p>제19조(이착륙장 제원·정보 관리) ①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정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(비상계획) ①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비상지원 기관(의료시설, 구조·소방, 경찰)의 명칭, 위치 및 전화번호 2.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하고, 분기 1회 점검 후 기록할 것 <p>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내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자체 안전점검) ①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이착륙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불만사항 접수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는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며, 점검표에는 점검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2조(검사 및 대상) ① 지방항공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</p>
--	--

과 같다.

1. 활주로 및 유도로 관리상태
2.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의 관리상태
3.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
4.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
5. 연료저장시설이 있을 경우 관리상태
6.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

제24조(시정조치)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이착륙장 설치·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별표 1] 1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

1. 활주로 시단 및 중단(양쪽)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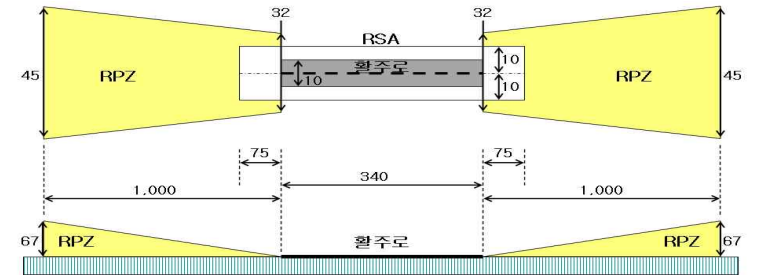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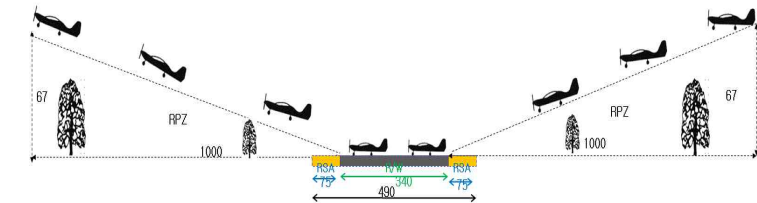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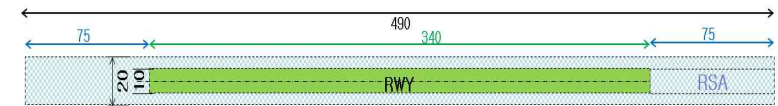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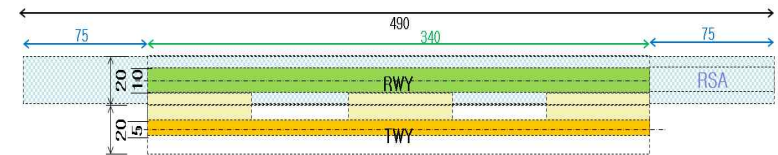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로 평면도

2. 활주로 시단(한쪽)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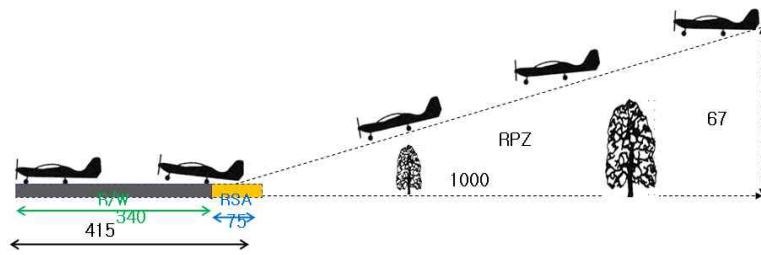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활주로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착륙 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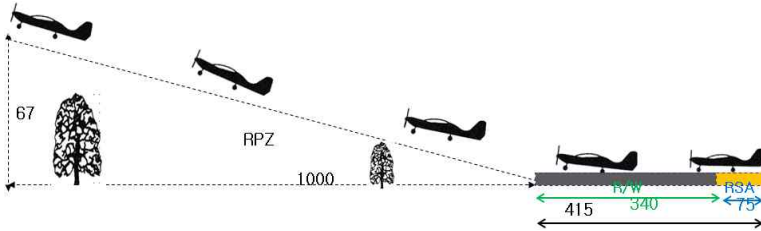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활주로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륙 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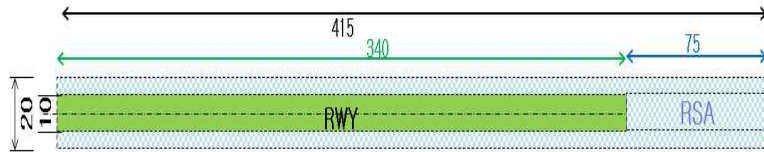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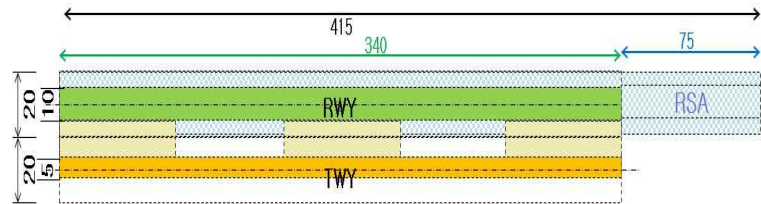


그림 8.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로 평면도

[별표 2] 2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

1. 활주로 시단 및 종단(양쪽)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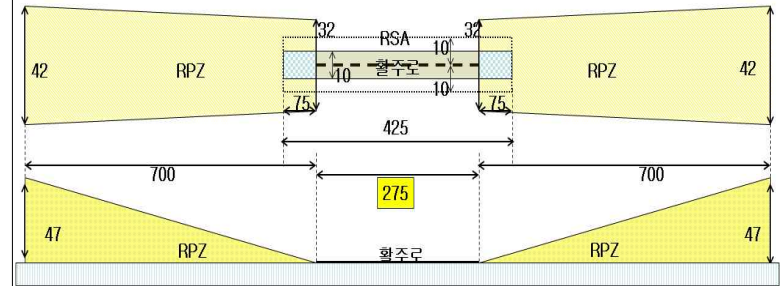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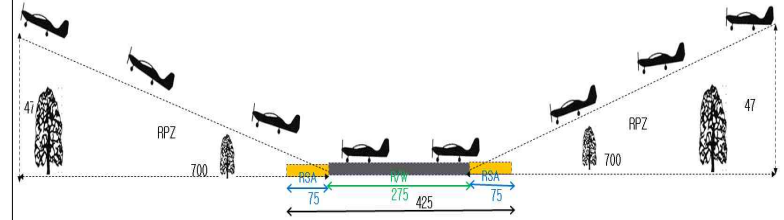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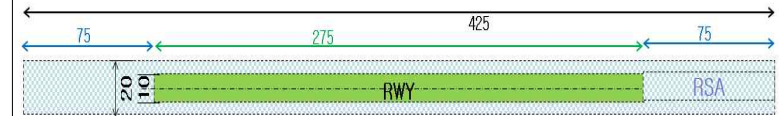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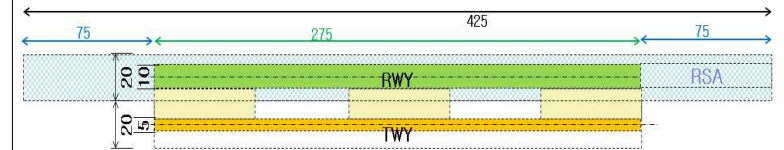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로 평면도

2. 활주로 시단(한쪽)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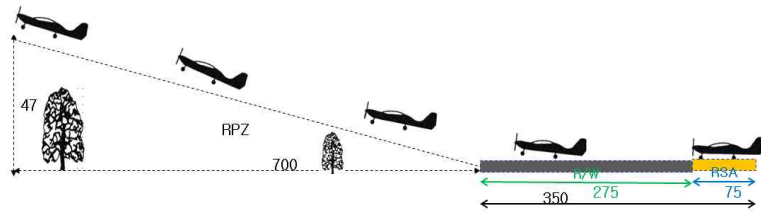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.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이착륙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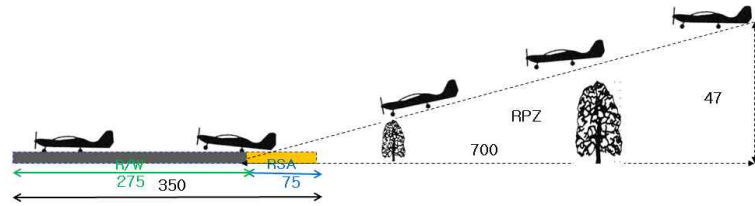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4.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착륙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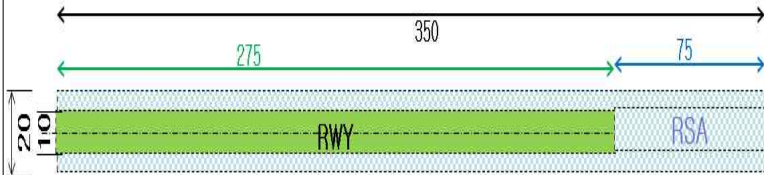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.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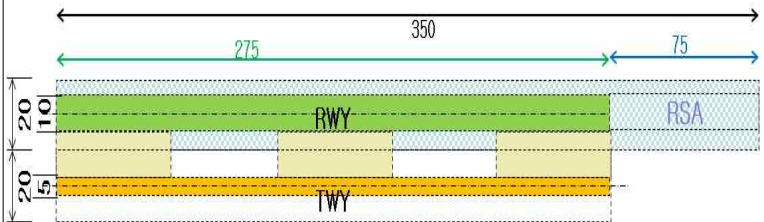


그림 16.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도로 평면도

[별표 3] 3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

1. 활주로 시단 및 종단(양쪽)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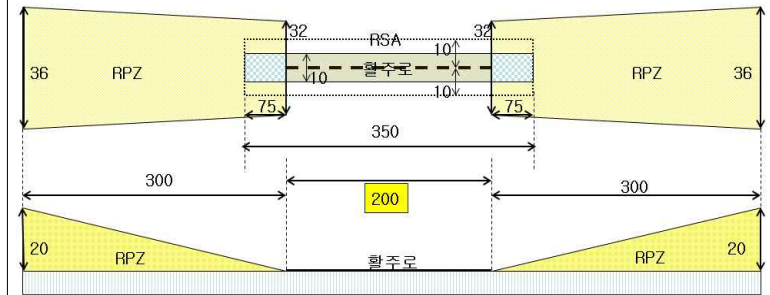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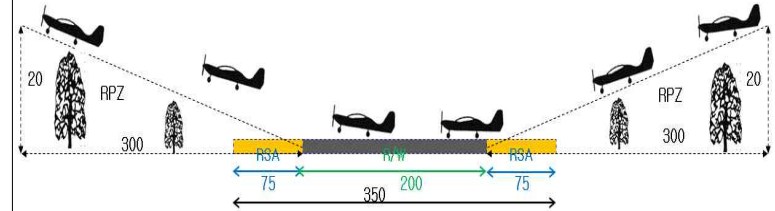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8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의 이착륙 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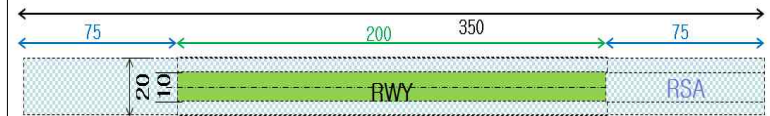


그림 19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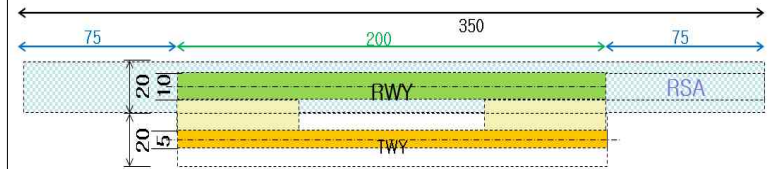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0.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도로 평면도

2. 활주로 시단 한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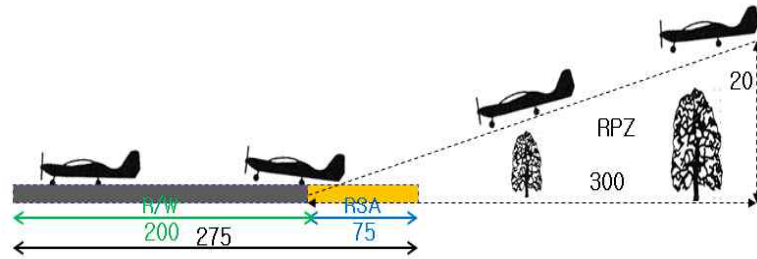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1.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착륙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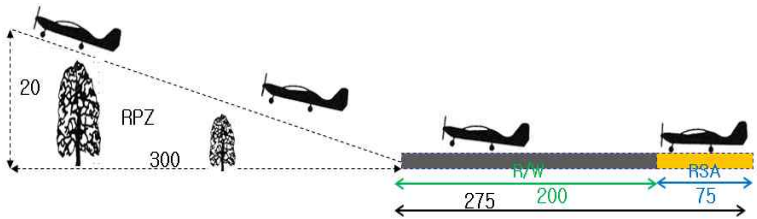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2.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이륙형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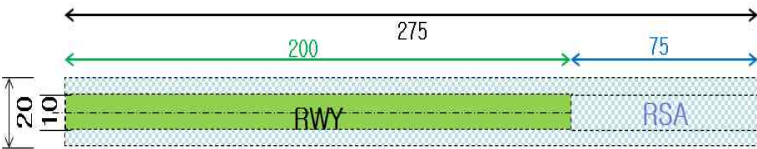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3.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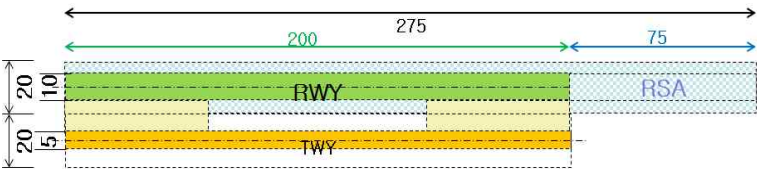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.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도 평면도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000000000			
	규제사무명	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신설(내용심사)	등록단위	부수적규제	
	성격별분류	사회적규제	유형/구분	기타1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제안부처	국토교통부	
	담당부서	공항안전환경과	처리기관	소속행정기관	
	작성자 인적사항	-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: 항공주사 임경택(044-201-4352)			
4. 근거법령명 등	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 (비행클럽 운영자)	30명 (비행클럽 운영자)	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	3-2. 이 해 관계 자 협의 참조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: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규제내용 : 없음(신설) - 법적인 근거 없이 대부분 간척지, 하천부지 등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 - 신설(강화) 규제내용 -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경량항공기 등을 위한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				
8. 규제체계도					

② 규제영향분석서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문제정의

(이착륙장 현황)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을 자체적으로 운영·유지하고 있음

○ 전국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*은 하천부지·간척지·육군비행장 임대 및 개인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나, 하천부지 사용 비율이 높음

* 총26개소: (하천부지) 14개소, (개인·법인) 7개소, (간척지) 3개소, (육군비행장) 2개소

○ 정부는 이착륙장 조성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고, 이착륙장 설치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

- 기존에 운영중인 26개소 이착륙장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·사용권이 확보된 곳은 17개소, 미확보 된 곳은 9개소

(이착륙장 설치기준 조사현황)

○ **(활주로)** 길이는 275m~700m, 폭은 6m~30m로 이착륙장 설치 기준*을 충족하고, 표면은 포장·비포장 및 석분으로 구성

* (1등급) 활주로 340m 이상, (2등급) 활주로 275~339m, (3등급) 활주로 200~ 274m

○ **(안전구역)**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은 대부분 안전구역을 한쪽만 충족하고 있고, 양쪽 적용시 대다수 기준* 미충족

* 길이는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,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

○ **(보호구역)** 담양 이착륙장은 활주로 양쪽에 장애물이 있어 기준*을 충족하지 못하고, 나머지 이착륙장은 한쪽 또는 양쪽 충족

* (1등급) 길이 1000m, 폭은 내측 32m 외측 45m, (2등급) 길이 700m, 폭은 내측 32m 외측 42m, (3등급) 길이 300m, 폭 내측 32m 외측 36m로 사다리꼴 모양

○ **(운항시설)** 대부분의 이착륙장은 풍향지시기가 설치되어 있고, 전기·정비·인터넷·연료보급 시설을 구비

(문제점) 경량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레저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, 경량항공기 인명사고는 연속 발생

* 사고현황 : 최근 6년간('09.1~'14.3) 총24건 발생하여 20명 사망

** 경비행기 안전대책 마련요구(국회: '12.7, 중앙일보: '12.11)

○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, 이착륙장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기준 도입 필요

(제도개선)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, 항공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

○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활주로·안전구역·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

2. 규제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책목표 : 경량항공기 사고예방 및 항공레저 활성화

기대효과

- 국민소득의 증가와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, 항공레저 산업 발전에 기여

정부개입의 필요성

<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>

- 신설되는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없음
 - 현재 운영 중인 이착륙장은 대부분 간척지·하천부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비행을 하고 있으나,
 -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이착륙장 조성의 촉진과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 필요

<비규제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>

- 이착륙장 설치·관리 기준이 없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간 경량항공기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
-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시 활주로·안전구역의 길이·폭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달성 불가능

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

-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은 신설 규제로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은 없음

나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은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시 활주로·안전구역의 길이 및 폭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대안 검토 대상이 아님
- 따라서,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고시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
- 유사사례 : 비행장의 경우 항공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,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'비행장시설 설치기준'(고시) 운영

2) 비용·편익분석과 비교

규제의 비용

- 경량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음*

* 전국에 이착륙장은 26개소가 있으며, 임대비용은 제외하고 경고문 게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12백만원

규제에 따른 편익

-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, 이착륙장 조성 촉진 등 항공레저 활성화로 사회적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

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- 이착륙장 설치허가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있으나, 항공안전 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

□ 시장경쟁(공정경쟁)에 미치는 영향분석

- 동 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 제한 또는 진입규제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, 시장경쟁(공정경쟁)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

□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

- 동 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 제한 또는 진입규제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고,
 -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제비용 유발사항 또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(집행시기, 집행방법 등의 차별)이 가능한 규제가 아님

다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1) 규제의 적정성

-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규제로서 적정
 -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이착륙장(26개소)이 설치기준 고시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없으므로 동 규제는 적정함
 -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의 여건을 반영하고, 외국 기준보다 일부 완화하여 마련한 최소의 기준으로 적정함
- 항공법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,
 - 항공법 시행령에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 -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내용에 부합

2) 이해관계자 협의

□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

- 활주로 보호구역은 행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규정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,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이 모두 기준을 충족
- 항공법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,
 -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되었고,
 - 우리나라의 항공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이착륙장 시설기준은 필요
- 항공법 시행령에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철회는 불가

3) 규제집행의 실효성(집행자원과 능력)

□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국토부는 항공분야 조직으로 본부에 1실 3개국 13개과가 있고, 2개 지방항공청을 별도로 설치되어 국토부에서 행정적 집행 가능

□ 사회적 집행가능성

- 관련 업무는 행정청인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할 업무임